

보수규정

제정 2021.12.28.
경상북도 승인 2021.12.31.
개정 2023.05.19.
경상북도 승인 2023.06.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임원·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리)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이라 함은 사무처장을 말한다.
2. “직원”이라 함은 일반직, 계약직 직원을 말한다. <개정2023.05.19>
3. “보수”라 함은 기본급과 기타 제 수당을 합산한 액을 말한다.
4. “기본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5. “제 수당”이라 함은 기본급의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항목의 부가 급여를 말한다.

제2장 보 수 등

제3조(보수의 구분) ① 직원에 대한 보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단, 사무처장은 연봉제로 한다.

1. 기본급여(봉급)
2. 각종수당
 - 가. 정근수당
 - 나. 정근수당 가산금
 - 다. 가족수당
 - 라. 자녀학비보조수당
 - 마. 초과근무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무 수당)
 - 바. 명절휴가비

- 사. 연차휴가수당
- 아. 명예퇴직수당
- 자. 기타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규정에 정한 제 수당 및 당해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 준용

제4조(보수계산) ① 보수는 신규채용, 전보, 전직, 승진, 승급, 감봉, 기타 모든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보수의 지불기간 계산은 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공휴일의 휴무는 출근으로 계산한다.

③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 또는 해직될 때에는 그 월분의 급여전액을 지급한다.

제5조(지급일)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무처장이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초임급) ① 본 규정 제정시 근무중인자의 초임급은 당시 직급별로 책정된 호봉을 승계한 것으로 보며, 신규채용자의 초임급은 직급별로 규정된 최저호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직무와 동일한 경력이나 유사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환산표(별표 1)에 따라 환산된 호봉으로 한다.

② 승진에 있어서의 호봉획정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호봉을 획정한다.

제7조(봉급감액) 본 규정에 의한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일수를 제외하고, 매결근 1일에 대하여 봉급일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8조(기본급) ① 직원의 기본급은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를 준용한다.<개정2023.05.19>

② 사무처장은 연봉제로 하며, 경상북도출자·출연·단체연봉제운용기준을 준용하되,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2023.05.19>

제9조(수당의 지급)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수당을 공무원 수당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각종 수당 중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제3장 퇴직연금 제도

제10조(퇴직금) 만 1년 이상 근무한 사무처장 및 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11조(기금조성) ① 퇴직기금은 본회에서 기여하는 퇴직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로써 조성하며 이를 특별회계로 운영한다.

② 퇴직금은 매 회계연도 퇴직금 계정 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며 계상 금액은 본회 정원에 의한 총급여액의 12분의 1 이상(1개월분의 평균급여)을 적립한다.

③ 확정급여형(DB)인 경우 해당 연도내 일괄 적립하며, 확정기여형(DC)제도에 가입한 자 중 1년 이상 근무한 자의 경우 본인에게 지급될 퇴직적립금을 월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관리운영) 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본회와 직원 상호간 협의에 의해 퇴직연금제도를 선택·결정할 수 있다.

② 1항에 의해 결정된 퇴직금운영 및 관리를 위해 노동부에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된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토록 한다.

제13조(지급율) ① 퇴직금은 근속1년당 1개월분의 평균 임금을 지급한다.

② 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자에게 지급된 1년간 임금(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신고 항목)의 총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에는 그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④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퇴직금의 지급을 보류한다.

제14조(근속연수계산) 근속연한은 발령일로부터 기산하여(중간 정산자는 정산시점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까지의 일수를 계산한다. 다만, 잔여 월수가 1년 미만의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근속기간의 일수가 6월 이상일 때에는 1년으로 하며, 6월 미만일 때에는 6월로 한다.
2. 재직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1년으로 한다.

제15조(근속결격) 휴직 및 정직기간은 근속연한에 통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상으로 인한 휴가기간은 근속연한에 통산된다.

제16조(수령권자) 퇴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유족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의 유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퇴직금의 지급) 퇴직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 통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8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 지방보조금예산이 추가로 수반되는 경우 경상북도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다.

부 칙 (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경상북도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2023.05.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경상북도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